

대한장애인요트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4장 지도자

제16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 ①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감독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요트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3. 장애인요트연맹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장애인 특수종목의 경우, 제16조 ①항 2호, 3호에 의거 종목별 가맹단체장의 추천에 의거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한다.

③감독, 코치 이외에 보조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장애인올림픽대회(농아인올림픽 포함),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농아인아시아경기대회 포함), 유형별종합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는 해당 가맹단체의 추천에 의하되,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단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경우 대회 대비 훈련개시 최소 3개월 전에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를 선발하여야 한다.

⑤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보조지도자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최종 선발된 이후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7일 이내 이수확인서를 해당 장애인요트연맹(또는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